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오한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917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오한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화숙, 장상기, 이상훈,

문병훈, 이병도, 이은주, 이준형, 김춘례, 경만선, 김소영, 박기재, 황규복
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현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,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,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기에 서울 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이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국악발전의 환경을 조성,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인적·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함(안 제3조)
- 나.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안제5조)
 - 1.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
 - 3.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
 - 4.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
- 다. 시장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 악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라.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없음

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국악"이란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(樂)·가(歌)·무(舞)·희(戱)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서울 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 하고, 인적·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,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
 - 3.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
 - 4.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·단체,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·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- 제7조(국악 진흥 사업)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
 - 2.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
 - 3.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
 - 4.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·양성 사업
 - 5. 국악 거점 시설 조성 사업
 - 6.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
 - 7.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·유통 지원 사업
 - 8.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8조(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악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2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
 - 3.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
 - 4.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
 -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단체의 육성 및 지원)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

- 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0조(국악의 홍보 등) ① 시장은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축제 개최, 상품개발,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 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국악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 및 시 산하기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악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- 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 한다.
- 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), 제7조(국악 진흥 사업), 제8조(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), 제9조(단체의 육성 및 지원), 제10조(국악의 홍보 등), 제11조(협력체계 구축)에 따라 비용 발생
- ※ 단, 제7조(국악 진흥 사업), 제10조(국악의 홍보 등)의 경우, 해당사업을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
- ※ 또한, 같은 조례안 제7조 제5호(국악 거점 시설 조성 사업)와 제11조(협력체계 구축)는 서울돈화문 국악당 및 남산국악당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에서 제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 = 1,245,000천원
 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,245,000천원으로 연평균 249,000천원임
 - 추계의 전제
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,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 -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≒ 1,245,000천원(연평균 249,000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1)	2차년도 (2022)	3차년도 (2023)	4차년도 (2024)	5차년도 (2025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실태조사(제6조)	25,000	-	-	25,000	-	50,000
	국악진흥위원회 (제8조)	9,000	9,000	9,000	9,000	9,000	45,000
	단체 육성·지원 (제9조)	230,000	230,000	230,000	230,000	230,000	1,150,000
	소계(b)	264,000	239,000	239,000	264,000	239,000	1,245,000
□총 비용(b-a)		264,000	239,000	239,000	264,000	239,000	1,245,000

- 실태조사 ≒ 50,000천원
 - 5년간 실태조사 비용 = $\sum_{i=1}^{5} (\mathbf{H} \cdot \mathbf{S})i$

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, 2024년)

- 비용 ≒ 25,000천원 × 2회 = 50,000천원
- ※ 한국문화원연합회(2019)「2019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용역」사업비 25,000천원을 준용하였으며 3년마다 실시
- 국악진흥위원회 설치 · 운영 ≒ 45,000천원
 - 5년간 국악진흥위원회 설치 · 운영비용 = $\sum_{i=1}^{5} (\text{연간비용})i$ 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 ~ 2025년)
 - 연간비용 ≒ 참석수당 + 위원회 운영경비
 - = (150천원×12명×4회) + (30천원×15명×4회) = 9,000천원
 - ※ 국악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은 총 15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참석수당 지급 대상은 12명이고,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

- 단체 육성·지원 ≒ 1,150,000천원
 - $-5년간 국악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비용 = \sum_{i=1}^{5} (연간비용)i$ i= 비용추계 연차 $(2021년 \sim 2025년)$
 - 연간비용 ≒ 230,000천원
 - ※ 서울시 문화본부(2020년) 「연극단체 공연 활성화 지원」사업비 230,000천원 준용하였으며 3년마다 실시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주 무 관 김민호

8 02-2180-7932

e-mail: waterkim@seoul.go.kr